경북북부권내
지방 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경 상 북 도 의 회
(김명호 의원 외 12명)

경북북부권내
지방 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김명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8. 13.
발 의 자 : 김명호·서정숙·이왕식·
김종천·박진현·이상용·
고우현·도기욱·김영기·
김기홍·전찬걸·권영만·
홍진규 의원(13인)
찬 성 자 : 14인

1. 주 문

새정부 출범과 신도청 시대 도래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사법조직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법률 서비스 여건을 향상시키며, 경북의 광역행정권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경북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그동안 법원과 검찰청 조직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이로 인해 그동안 경북 북부 및 동해안권 주민들은 법률 서비스 혜택과 소송 및 민원 해결에 있어 많은 불편과 희생을 겪어왔음. 따라서, 조만간 경북도청이 경북 북부지역으로 이전되어 대구와 경북은 2개의 광역행정권역으로 분리 형성되는 전환점을 계기로 지방법원과 검찰청을 신설하면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경북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3. 주요 내용

현재 우리나라 사법조직(법원과 검찰청)의 지역적 불균형 배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 도청의 북부지역 이전에 따라 대구와 경북으로 광역행정권역이 분리 형성된다는 맥락에서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신설을 촉구함

※ 결 의 안 : 붙임

4. 결의안 제출처

○ 청와대(대통령비서실)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 대한민국 법무부, 안전행정부
○ 경상북도

5. 참고사항

○ 현행 법원 및 검찰청 조직 체계 : 붙임
○ 관련 법령 : 붙임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지방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박근혜 정부 출범과 경북도청의 신도시 이전에 즈음하여, 경상북도의회는 우리나라 사법조직의 불균형성을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향상과 광역행정권으로서의 경북도의 위상 정립을 위해 경북북부지방에 새로운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설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원의 조직은 대법원 산하에 5개의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산하에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검찰 조직도 법원의 조직에 대응하여 같은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고등법원 관할지역의 인구분포를 감안할 때 대구지방 법원이 관할하는 산하 지원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전체 인구 약 2,650만명)에는 9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각 지방법원 산하에 1～5개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부산·울산·경남권(전체 인구 약 790만명)에는 3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각 지방법원 산하에 마찬가지로 1～5개의 지원이 있으며, 대전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대전·충남·충북(전체 인구는 약 510만명)에는 2개의 지방법원과 각 지방법원 산하에 3～5개의 지원이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이 관할하는 광주·전남·전북·제주권(전체인구 약 580만명)에는 3개의 지방법원과 각 지방법원 산하에 3～4개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대구·경북의 전체인구는 무려 520만명이나 되나, 대구지방법원 하나와 산하에 8개의 지원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예하 지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결코 적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는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경북 북부 및 동해안권 주민들은 법률 서비스 혜택과 소송 및 민원 해결에 있어 많은 불편과 사회 경제적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 당국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 과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법원 및 검찰 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금, 경북도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도청을 이전하고 신도시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행정중심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도청 이전 및 신도시 조성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되면, 광역행정권역은 대구와 경북 2개의 축으로 분명히 분리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도의회가 요구하는 ‘경북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은 상기한 시대정신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현시켜 나가야 할 당위성과 현실성이 충분한 지역의 핵심현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경북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이 ① 우리나라 사법조직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② 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경북도의 광역행정권역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립하는 상생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면서,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신설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 8.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붙임>

현행 법원 및 검찰 조직 체계

<법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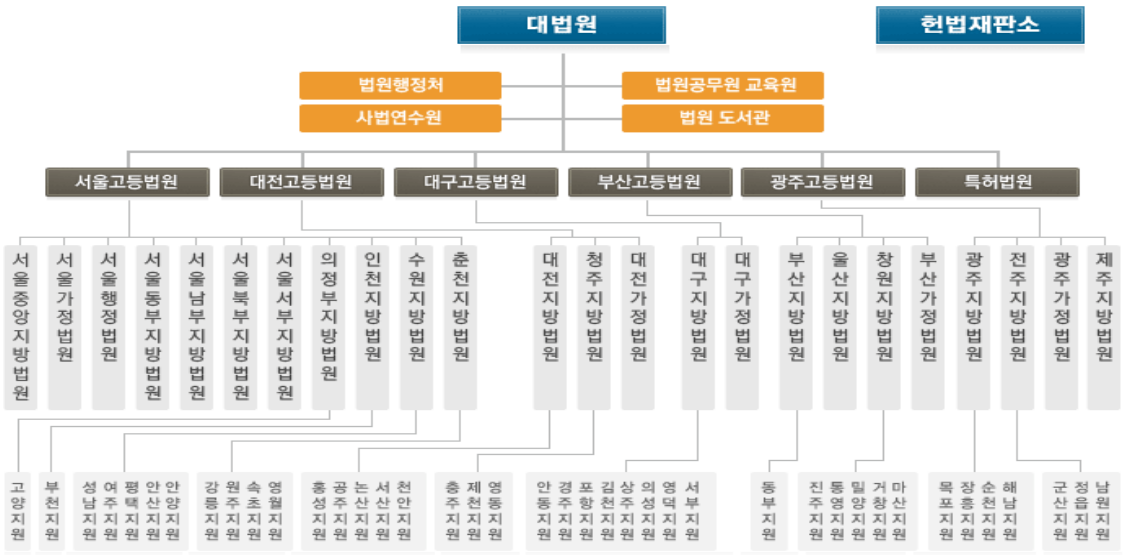

<검찰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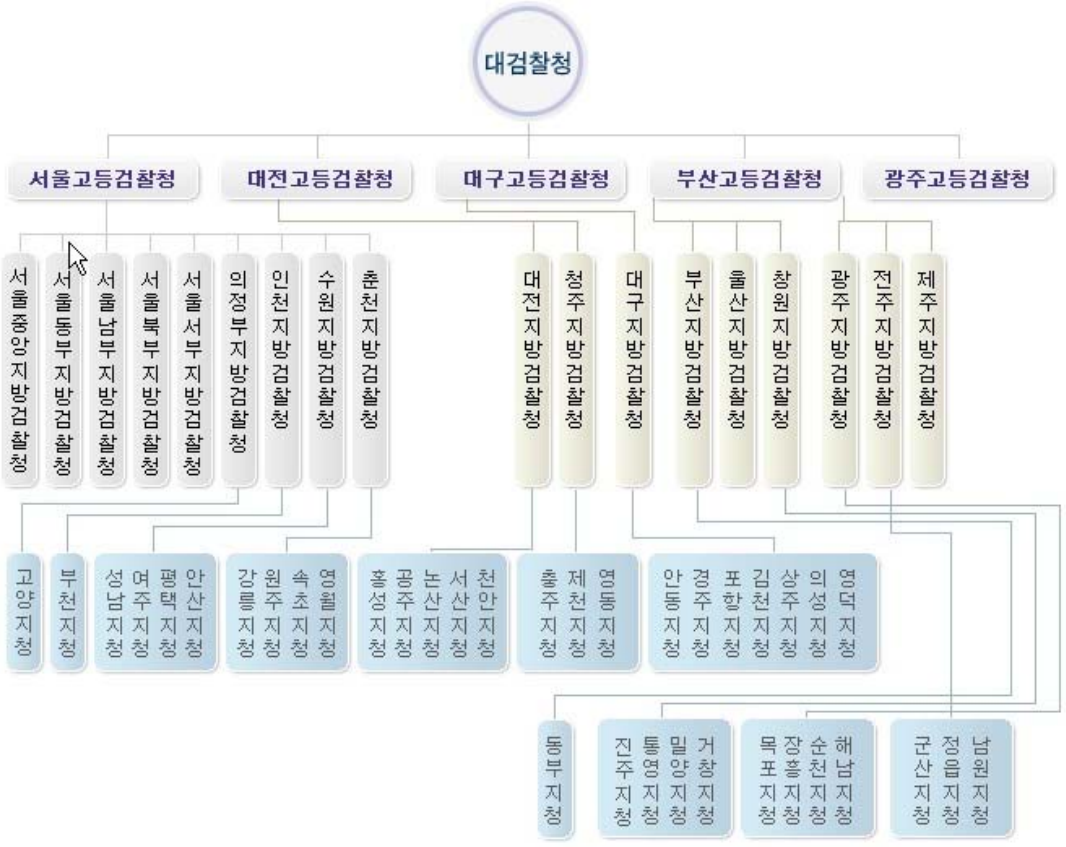

<붙임>

관련 법령

□ 대한민국 헌법(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법원조직법」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4.5]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법원조직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2·15>

제2조 (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 (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발의의원 서명명부

- 경북북부권내 지방 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

성 명	서명 및 날인	비 고
김 명 호	김명호	
서 정 숙	[illegible]	
李 旺 植	[illegible]	
김 종 철	김종철	
박 진 현	[illegible]	
이 상 용	[illegible]	
고 우 현	고우현	
도 기 욱	도기욱	
조 영 수	[illegible]	
김 기 홍	[illegible]	
정 한 교	[illegible]	
권 영 만	[illegible]	
홍 진 규	[illegible]	

찬성의원 서명명부

- 경북북부권내지방 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성 명	서명 및 날인	비 고
김 하 수		
김 영 석		
김 봉 교		
김 말 분		
이 상 효		
장 경 식		
박 기 진		
배 수 향		
곽 경 호		
심 재 [illegible]		
조 재 원		
이 경 원		
김 창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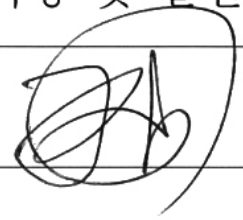
성 명	서명 및 날인	비 고
장대희